

#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 Checklist for School Crimes Prevention



조진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Cho, Jin-Il /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ojinil@kedi.re.kr

### 1. 들어가며

“...지난해 3월 서울 A초등학교 건물 안에 한 40대 남성이 들어가 이 학교 재학생 B양의 가슴을 만지고...(조선일보, 2012년 10월 2일)”, “...추석 연휴가 끝난 2일 오전 7시 서울 서초동 계성초등학교 담벼락은 여전히 뚫려...(중앙일보, 2012년 10월 4일)”, “...몇몇 교직원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기자에게 방문목적을 물어보지 않았다...(중앙일보, 2012년 10월 5일)”, “...교과부는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른 키 높이 이상의 투명 펜스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동아일보, 2012년 10월 5일)”, “...이들은 시청각실 문을 잠근 뒤 A양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조선일보, 2012년 10월 5일)”, “...외부인 침입에 의한 성범죄도 빈발하고 있으나 거의 무방비...(국민일보, 2012년 10월 5일)” 등 최근 10월 며칠 사이 각종 신문 등에 실린 학교 폭력기사만 해도 최소 10건이 넘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약 0.78%를 차지하여 큰 비중은 아니지만, 최근 초등학교 내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등 각종 학교범죄를 위한 전략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본 지면을 통해 저자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중인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연구<sup>1)</sup>의 일부

1)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로 국내, 외 CPTED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학교시설에 도입, 적용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CPTED 가이드라인 고찰

학교시설 범죄예방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국내, 외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을 고찰한 결과,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1 국내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국내 학교시설 CPTED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강은영 외(2010)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표 1>과 같이 크게 학교외부 환경요소와 내부 환경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국내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외부 환경 요소	토지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건물 용도	주택, 일반업무/상업시설, 관공서, 방범시설, 교육 시설, 유흥시설, 숙박업소, 공지(공사현장), 공원
내부 환경 요소	학교 경계	담장, 주출입구/부출입구
	학교내 외부 공간	운동장, 휴게공간, 보행공간, 주차공간(지하제외), 주차공간(지하포함), 자전거 보관장소, 커뮤니티 시설, 기타 공간 및 시설
	건물 내부 공간	건물현관 출입문, 교무실, 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관리실/숙직실, 화장실, 옥상공간, 복도/홀, 엘리베이터

가능한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음.(연구진 : 조진일, 박성철, 최형주, 박희원, 강석진, 연구종료 : 2012년 12월 예정)

유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영역까지 포함하여 총 150여 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2.2 일본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일본은 문부과학성(2004)의 “학교시설 방법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각 교육위원회와 학교 등 방법 대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의 방법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매뉴얼 형태로 개발하였다.

표 2. 일본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부지 경계 및 부지 내부	시설 배치	조망 확보, 관리부서 위치, 서비스 부문의 방법 대책
	문	문의 위치, 문의 구조
	담장	지켜야 할 영역의 경계로서의 담장, 담장 형태, 조망 좋은 담장, 담장의 경관 측면
	외등	밝기 확보, 지역의 위치, 조도 균형, 센서 부착 조명
	식재	풍부한 환경으로서의 녹색 경관, 조망의 확보
	*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건물	접수	방문자 확인, 위치·기능, 조망과 ‘사람의 시선’ 확보, 통보체제
	창문 출입구	실내에서의 시인성 확보, 복수의 출입구, 건물의 출입구
	피난 경로	경로 설정, 대피층 출입구 관리, 사인 계획
방법 감시 시스템	* 설치 목적·장소	
	* 출입 관리	
	* 침입 감시	
	* 감시 체제에 대한 배려	
	* 야간 휴일 기계 정비	
통보 시스템 도입	통보 장치	경보 장치의 중요성, 경보 장치의 선정과 설치, 경보 및 비상등의 선정과 설치
	연락 시스템	연락시스템 구축, 관계 기관에 긴급 통보, 비상사태 대책 본부, 학부모 정보 전달
학교와 지역 통합에 대응	시설 개방 유의점	학교 시설 개방시 공간 및 동선의 명확화, 합의의 형성과 명확화, 학교 개방 시 시설 관리자 등의 역할
	시설 복합화 유의점	학교시설 복합화시 공간 및 동선의 명확화, 종합적인 계획 및 운영, 시설 관리자 등의 역할

일본의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통보 및 연락시스템, 학교시설개방, 시설복합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2.3 영국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는 영국수석경찰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에서 시작된 경찰 주도의 범죄예방 인증제도이다. SBD Schools(2010)

표 3. 영국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Sec.1 배치와 디자인	건물 입지	도시설계, 적절한 계획방법과 필수사항, 위치와 인접대지 용도, 여러 부지에 위치한 학교, 건물들의 구성, 위치, 외부 행위 영역, 관리시설
	경계부 보안	대지 경계, 보안용 담장, 출입문, 방어용 울타리 (장애물)
	출입 공간	보행자와 차량출입구, 통학버스 구역과 폐기물 수거시설, 안내표지판, 지역주민들의 접근
	주차 접근	보행자와 차량에 의한 접근, 차량주차와 우편물 배달, 오토바이와 자전거 주차
	내부로 접근	운동장내의 경로, 운동장의 공공이용, 운동장의 지역주민 이동경로
	외부 공간 계획 쟁점	조경, 외부시설, 휴지통, 운동장비, 학생모임 장소의 문제, 자연감시와 뒤로 물러진 출입구, 임시교실, 특별 체육시설,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광 시설 설치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보일러
	보관 시설	각종 장비의 창고, 외부 쓰레기 저장소, 연료 저장소, 청소도구 보관장소
	다용도 우편물 보관소	계량기 검침과 다용도실의 보안, 우편물 배치
	외부 벽체 주변	자동 창문 개폐시스템과 환기시설, 벽체, 입면, 간극과 낙서, 지붕디자인과 접근
	내부 배치	학교건물 출입구, 방문객 영역과 통제 및 인터뷰 공간, 화장실, 복도, 계단, 내부 출입문, 교실의 순환 : 야외운동, 수영, 과학 교육, 주방과 학교식당, 의료실(보건실)
Sec.2 물리적 보안	보안 조명	외부조명, 내부조명
	주변 학교 부지	담장, 출입문, 보안용 블라드, 통신 및 공통설비 접근 보호시설, 외부 조명 표준 요구조건, CCTV,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모터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안전
	건물 외벽	벽면 설치, 유리 커튼월과 창문벽체, 회전형 셔터 및 격자형 창문, 회전형 셔터 출입문, 지붕 설치, 지붕 조명 및 천창, 우편배달, 장애인을 위한 접근로, 외부 출입문, 출입문 잠금 시스템, 유리가 끼워진 출입문과 투명한 안전패널, 문의 설치, 보안유리, 전자식 접근통제, 전자식 접근통제 기준, 접근통제 및 보안직원, 창문 틈(간격)의 보호
	내부 보안	침입경보 시스템, 공공 알림 시스템, 컴퓨터와 서버실에 대한 물리적 보안기준, 내부 출입문, 교무실, 학생 사물함, 급속 탐지기
	기타 보안	보안요원, 경비원과 경비실, 방화범죄와 화재예방, 알려진 기준을 위한 다른 유용한 보안 장비

는 학교 건축환경에서 범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이며, 크게 2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섹션 1은 배치 및 디자인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섹션 2는 물리적인 범죄예방 조건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섹션별 중요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역별 균형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학교시설 범죄예방 체크리스트(안)

상기 국내, 외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과 CPTED 전문가, 학교시설전문가, 학교생활부장 등의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시설에 도입,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체크리

스트(안)를 도출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학교 주변환경, 대지경계, 교내 외부공간, 교내 내부공간, 운영 및 관리 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주요한 항목과 체크리스트 일부를 소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시설 범죄예방 체크리스트(안)-일부

대분류	중분류	체크리스트	
학교 주변 환경	인접 도로	학교 출입구와 면한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차량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한다.	
	보행로	보행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는 자전거도로, 가로설치물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보행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및 보도경계석(20cm이상)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대지 경계	담장	담장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	
		담장의 높이는 학교주변, 담장의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되 안전한 지역은 최소 1.5m 이상, 위험한 지역은 최소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담장 주변에는 CCTV 등 방범 설비를 설치한다.	
	출입구	학교가 범죄보호구역(CCTV촬영 등)임을 공지하는(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모든 출입구는 학교주변 여건상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자연적 감시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한다. 출입구에 학교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방과후 또는 주말 학교시설 이용수칙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출입구에 방문자의 용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관리실(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 인터폰 등 방범설비를 설치한다. 외부관리실(경비실)은 반드시 학교 내, 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입면구조로 설치한다.			
교내 외부 공간	휴게 공간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으로 개방된 공간에 배치한다. 휴게공간 주변의 조경은 가급적 시선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	
	운동 시설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으로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보행통로 등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특정한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중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	
	녹지 공간	교내 전반의 조경 수목은 자연적 감시에 방해되지 않는 수종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 수목은 직접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해서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보행 공간	보행로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에 계획하며, CCTV의 감시범위 내에 보행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위치, 각도를 조절한다. 보행로의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적정 조도를 유지한다.	
		주차 공간	지상주차장은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한다. 단,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지상 주차장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하고, 교직원용과 방문객용을 구분하여 구획한다.
	자전거 보관소 및 기타	자전거보관소는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이나 출입구 주변,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하고, 벽체가 있을 경우 투시형 구조로 한다. 자전거의 훼손 및 절도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강화(바퀴와 크로스바 모두 잠글 수 있는 구조물)한다.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옥외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교내 내부 공간	건물 출입문
복도 계단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후미진 계단 및 복도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 또는 미로(maze)식 출입구로 계획한다.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 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		
행정실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방문자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교내 내부 공간	교사 공간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은 내, 외부의 자연적 감시가 수월하도록 층별로 분산배치하고, 출입문(또는 복도창)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	
	도서실	도서실 출입구에 도서분실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도서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체육관	체육관 내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 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옥상 및 기타	옥상으로의 진입부 또는 옥상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거나, 학생출입을 통제한다.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하층, 지상층을 이용할 경우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복도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을 경우, 모든 건물 내부의 출입문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투시형 구조로 한다.	
운영 및 관리	인력 및 운영	등하교시를 제외한 모든 외부출입구는 잠그거나, 관리실(경비실)이 있을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방문자는 반드시 방문자 전용출입구(현관)를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한다. 모든 방문자는 관리실(경비실, 행정실 등)을 반드시 경유하여 방문기록 작성 후 출입증(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CCTV 모니터링, 비상벨 작동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실을 지정하고, 비상시 경찰서, 경비업체, 행정실, 교무실 등과 연락 가능한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스킨폴리스 등 학교안전전담인력을 구성, 운영한다. 학교 범죄 및 폭력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한다.	
		유지 관리	학교 범죄 및 폭력 발생건수, 상담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한다. 모든 복도 창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것으로 하되, 시트지나 불투명 재질의 부착물 사용을 규제한다. 교내의 모든 조정 수목은 보행자와 교사동 내부로부터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한다. 교내보안, 방법장치 및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 순찰, 점검, 기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야간에 학생,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리인을 배치한다.
			교육 및 기타

#### 4. 맺음말

향후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면 체크리스트별 평가기준, 점검방식 등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저자는 금번 연구수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영국의 SBD와 SE<sup>2)</sup> 제도가 매우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실정에 적합하고 일선 학교 현장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시설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둘째, 학교시설에 대한 CPTED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증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SBD는 영국의 “범죄와 무질서법 제17조(Section 17 of the Crime & Disorder Act 1998)”의 법적 기반위에서 물리적 환경(건축, 설비, 자재, 시스템 등)측면에서의 범죄예방디자인인 반면에, SE(Secured Environment)는 2006년부터 ACPO(CPD)에 Martin Gill 범죄학 교수가 제안한 범죄예방환경 운영과 프로그램의 의미함. SBD와는 별개의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효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셋째,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CPTED 홍보 및 정기적인 사용자 대상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영국의 CPDA<sup>3)</sup>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디자인과정에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가이드 하고, 자문,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참고문헌

- 강은영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조진일 외,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연구(중간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2
- (사)일본건축학회, 학교시설의 방법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문부과학성, 2004
- ACPO, Secured By Design 2010, CPI

3) 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를 말하며 영국 각 지역별 SBD 담당 경찰관을 의미함.